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3. 9. 11.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9월 3일

나. 제출자 : 고기판 의원 외 5인

다. 회부일자 : 2013년 9월 5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 9. 9)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고기판 의원 )

가. 제안이유

-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청장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책무와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 구성·기능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안 제6조)
-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및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안 제10조)
- 공익신고센터를 통한 공익신고 접수처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교육지원 등을 통

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6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이 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에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목적에 따라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에 지원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음.
  - 안 제7조 ~ 제11조, 안 제14조 ~제17조까지에 공익신고자 보호환경 조성, 우선구매, 보조금 지급, 표창의 수여,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교육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신고 제도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 및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뒷받침 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 공익신고의 효율적인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공익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공익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반 절차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그간 공공부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은 「부패방지법」에 의해,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차원의 보호 장치가 가동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령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가 부족하고,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의 부재 등을 보완하여 자치구의 역할에 맞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익신고는 최근 복잡·다양한 행정현실 속에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따라 문제를 고발하는 용기있는 행동으로, 이를 권장하고 보호해줌으로서 궁극적으로 사회정의 실현과 건강한 시민사회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공익제보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2012년 4월에 통보된 국민권익위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는 등 법체제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고기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
----------	-----

발의년월일 : 2013년 8월 일  
발 의 자 : 고기판의원 외 5명

### 1. 제안이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책무와 공익신고  
보호지원위원회 구성·기능 등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안 제6조)

나.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및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안 제10조)

다. 공익신고센터를 통한 공익신고 접수처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라. 자치법규안 : 별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구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구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보조금”이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구청 국장급 공무원

3. 법관, 교육자,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 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자 보호환경 조성사업 선정)**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환경 조성사업 (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조성사업의 선정기준 및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4조(교육지원)**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등)**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16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